

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3에 의거하여 2025. 3. 31.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금천탁구회관 위탁체 선정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추진근거
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1조
- 다.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

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기간 : 2025. 4. 1. ~ 2028. 3. 31. (3년)
- 나. 심사대상 : 사단법인 금천스포츠클럽
- 다. 위탁사무 : 금천탁구회관 운영 및 주민 이용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라. 선정방법 :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항목별 채점표에 의거 심의
- 마. 기존 위탁 현황

1) 시설개요

기관명	소재지	개관일	대표자	위탁개요	
				위탁체	위탁기간
금천탁구회관	시흥대로51길 93(시흥빛물 펌프장 3층)	2011. 5. 16.	이동수	사단법인 금천스포츠클럽	2022. 4. 1. ~ 2025. 3. 31.

2) 위탁업무

- 가) 금천탁구회관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
- 나) 지역 주민들을 위한 탁구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재계약 여부 결정(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처리)

사. 위 탁 료 : 연 8,370,000원

4. 재위탁 추진일정

가.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('25. 1. 말)

1) 위 원 : 7명(위원장 포함)

공무원(3)	구의원(2)	전문가(2)
국·과장 (문화환경국장, 문화체육과장, 민간위탁 총괄 담당과장)	구의원 (의회 추천)	변호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

2) 심의 항목 : 3개 항목(공신력, 운영능력, 종합의견)

3) 심의 결과

가) 70점 이상 : 위·수탁 협약 체결

나) 70점 미만 : 수탁기관 공개 모집

나. 구의회 재계약 보고('25. 2. 중)

※ 복지건설위원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

다. 수탁기관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('25. 2. 말)

라. 위·수탁 계약 체결('25. 3. 중)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성과평가 결과보고

관계법령

『지방자치법』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『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』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『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』

제10조(행정재산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

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(관리수탁자)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,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,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4에 따른다.

⑤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『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4조의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문화·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
8.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

『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』

제14조(위탁관리)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·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③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금천구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

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 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『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』

제21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,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·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

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.

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

□ 평가근거

- 서울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(성과평가)
-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위·수탁 계약 체결[문화체육과-6980, (2022. 3. 15.)]

□ 평가개요

- 평가일자 : 2025. 1. 16. (목)
- 평가대상 : 금천탁구회관 위탁운영 전반
 - ※ 위탁기간 : 2022. 4. 1. ~ 2025. 3. 31.(3년)
- 평가방법 : 성과평가표에 의거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
- 평가자 :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3명
- 평가항목 : 2개 부문 7개 분야 18개 항목 (100점 만점)

구 성		배점 (100)	지 표
공통 (60)	사업운영 비전	5	- 기관의 미션과 비전, 사업계획의 적절성
	재정 운영	5	-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, 예산집행의 효율성
	시설 운영	20	-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
	사회적 가치	10	- 사회공헌, 주민참여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
	이용자 만족도	20	- 이용자 만족도 제고
개별 (40)	사업 운영	30	- 사업목표 달성 및 사업 활성화 노력
	개선 노력	10	-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등 개선 노력

□ 평가결과조치

- 적정 (평점 75점 이상) : 재계약 적격 심의 진행
- 미흡 (평점 75점 미만) : 재계약 불가, 공개모집 추진

□ 평가결과

잘된 점

- 설문조사 결과 이용 주민의 금천탁구회관 이용 만족도는 78.66점*
* 리커트 방식 : 매우그렇다(100점) ~ 전혀 아니다(0점)
- 생활체육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 및 체력증진에 기여
-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로 지역 및 동호회 간 체육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, 금천구 탁구 발전에 이바지

미흡한 점

- 지리적 악조건으로 구민 접근성이 떨어짐
- 탁구회관 시설 대비 회원수가 많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
- 스포츠클럽 법인통장과 탁구회관 운영 통장 혼용으로 회계관리의 투명성 부족

개선과제

- 탁구회관 이용 시 주차요금 할인방안 검토 및 시설관리공단 협조요청
- 이용 인원이 적은 시간대 탁구회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노력 필요
- 재계약 시 탁구회관 운영통장 별도 마련 및 수입지출 관리 강화

□ 평가기준

우 수	양 호	보 통	미 흡
100점 ~ 90점	89점 ~ 75점	74점 ~ 65점	65점 미만

□ 민간위탁 운영평가 : 79점 [양호]

평가 세부점수

- |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통분야(60점) : 51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운영 비전 (5) : 4점 - 재정 운영 (5) : 3점 - 시설 운영 (20) : 17점 - 사회적 가치 (10) : 9점 - 이용자 만족도 (20) : 18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별분야(40점) : 28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운영 (30) : 21점 - 개선 노력 (10) : 7점 |
|---|--|